

코로나19 대응지침(제12판) 일부수정 사항안내

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

※사례 정의

◆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*

* 22. 3. 14. ~ 22. 5. 13까지 **환달간** 한시 시행

◆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

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○ 확진환자.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▶

▶ 22.3.14~22.5.13까지 **환달간** 한시 시행

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
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

해외입국자 관리방안

※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

1) 격리 장소 이동

- 관할 지자체(자가격리)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(시설격리)가 이동조치 시행
-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(자차)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,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

2) 격리 조치

- (지자체)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 실시,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
- (추가검사) 입국자는 입국 후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(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**선별진료소** 방문)
- *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

진단검사

-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
- (RAT방법)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**선별진료소** 방문
- *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
-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~7일차 PCR검사 실시

확진환자 관리방안

검사 권고 기준

-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
- 확진환자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
- * 신속항원검사: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(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, **선별진료소** 방문)
- *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

Q&A

Q13.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?

-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**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** 있습니다.
- **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** 있습니다.

Q14.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,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,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?

-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**관련 증상이 있어**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, **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**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확진자의 밀접접촉자,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,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,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
Q15.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?

- ~~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(자가검사)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.~~
-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, 검사비는 무료**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** 있습니다.

<진단총괄팀>

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
검사 중단(4.11.)

출처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3156(2022.4.14.)

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지자체용)제12판 일부수정안내